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736
----------	------

발의연월일 : 2025. 1. 23.

발의자 : 주철현 · 안도걸 · 박균택
양문석 · 박정현 · 박용갑
이병진 · 위성곤 · 장종태
김문수 · 이원택 · 조계원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어자녀 등이
증여받는 어선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
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등 어업·수산 분야에 대하여 조세감면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임.

그런데 고임금, 고금리, 고물가 등에 따른 어가 경제 위축으로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3, 제71조, 제72조, 제87조의2, 제88조의5, 제
89조의3, 제105조제1항, 제106조제1항제1호, 제106조제2항 및 제111조
제1항 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의3제1항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027년 1월 1일”을 “2030년 1월 1일”로 한다.

제89조의3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7년 1월 1일”을 “2030년 1월 1일”로 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5호 및 제6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을 “제5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제6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및 제12호는 2025년 12월 31일”을 “제1호는 2028년 12월 31일”로, “적용하며, 제8호”를 “적용하며,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및 제1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로,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를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로,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를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 세표준
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
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2027년 1월 1일 이후 조합 등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 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② 2030년 1월 1일

1. ~ 6. (생 략) ② (생 략)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u>제1호</u> , <u>제4호의2</u> , <u>제5호</u> , <u>제9호의2</u> 및 <u>제1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u>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5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u>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u> 실시협약이 <u>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u> , <u>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u> 실시협약이 <u>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u> , <u>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u>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u>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일까지</u>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 1. ~ 13.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 ----- ----- -----. ----- <u>제1호는 2028년 12월 31일</u> ----- ----- ----- ----- ----- <u>적용하며</u> , <u>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및 제1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u>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u>제8호</u> ----- ----- <u>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u> ----- ----- ----- <u>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u> <u>2023년 12월 31일까지</u>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 -----.
---	---

